

생활관운영규정

제정일자 2018.08.22

1차 개정 2025.06.2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예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의 재학생 및 외국인유학생 등에게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 및 국제예술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생활관은 국제예술대학교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3조 (개관기간) 생활관 개관은 우리 대학 학칙에 규정된 개학 기간으로 하되,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 기간을 연장, 단축 및 휴관할 수 있다.

제4조 (시설이용)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재학생에 한하여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목적에 부합되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우리 대학교 재학생 이외의 학생 및 단체에게도 일정기간 생활관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경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수칙) ① 사생의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생활관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활관 사생은 1학기당 각 1회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는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위원회

제6조 (조직) ① 생활관에 관장, 생활지도 직원(관리사감) 및 관리원(당직자) 등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생활관에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및 생활조교 등의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제7조 (교직원의 임무) ① 관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생활관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② 생활지도 직원(관리사감) 및 관리원(당직자)은 생활관의 운영·관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사생의 생활 및 사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③ 직원의 업무분장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관장, 학생처장, 학생과장, 사무처장, 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제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의견조율
3. 생활관비 산정 및 반환 지침의 협의
4. 생활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 (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입사자격 및 퇴사

제12조 (입사자격) ① 생활관의 입사는 재학생 및 유학생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선발한다.

② 국내 재학생은 장애학생, 학업 성적, 원거리 거주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사생선발에 관한 세부기준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으며, 입사중 이라도 퇴사하여야 한다.

1.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전염병 질환 이환자 또는 보균자
4. 휴학 중인 자
5.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입사기간) 입사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입사등록) 입사가 허가된 자는 지정 기한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서약서와 사생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퇴사) 사생이 자진 퇴사하고자 할 때는 퇴사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퇴사처분) 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생에 대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생활관 수칙을 위반하여 생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외부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박시킨 자
3.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자
4.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5. 생활관 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20점 이상을 받은 자

제18조 (생활관비) ① 사생은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비의 금액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생활관시설 사용비용) 생활관 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공과금(수도, 가스, 전기 사용료) 등 일반 유지관리비는 사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2항 관리원(당직자), 제9조 학생처장, 학생과장)